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2019년)

☐ 계약목적

- 수급자 권리보호, 보호자의 욕구 충족,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방지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

☐ 계약기간 등

- 계약기간 :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
- 이용시간 : 평일 8시 ~ 20시 / 토요일 8시 ~ 18시
- 이용절차
입소상담→ 서류준비→ 임시적응기간→ 판정회의→ 이용승인통보→ 입소회의

☐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(2019년 예시)

등급	이용시간	본인부담금 (주 5일, 월 20일 기준)	비급여 (점심+간식+저녁 기준)	총액 (20일)
2등급	10시간	8,709 (174,180)	140,000	314,180원
3등급	10시간	8,046 (160,920)	140,000	300,920원
4등급	10시간	7,844 (156,880)	140,000	296,880원
5등급	10시간	7,644 (152,880)	140,000	292,880원
비급여 항목	식비 : 1식 3,000원 / 간식비 : 1일 1,000원			

※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이용시간 및 비용이 변동됩니다.

※ 등급별, 이용시간별 세부 금액 기준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」, 「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

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: 이용규정 참조

☐ 계약의 해제 : 이용규정 참조

☐ 붙임 : 운영규정(이용계약)

제7조(계약의 목적 및 절차) ① 이용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.

1.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
2. 서비스제공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3.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② 서비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하며 장기요양등급, 본인 부담금의 변경 등의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9조(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 ① 월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, 본인부담금, 비급여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
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한다.

③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0조(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, 지침, 고시의 변경으로 수가가 변경된 경우
2.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
4.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

제11조(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) 제10조의 비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2조(계약의 해제) ① 수급자(보호자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센터가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센터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(보호자)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4. 기타 수급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2.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4. 수급자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5.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6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7.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③ 수급자(보호자)는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신원인수인의 권리)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2.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3.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4.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제14조(신원인수인의 의무)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.

1.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3.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5.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, 입·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6.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.
7.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.